

평정 업무

1 일반사항

1. 교육공무원 승진규정(대통령령 제33528호, 2023.6.13., 일부개정, 시행 2024.3.1., 이하 ‘승진규정’)을 숙독하고 본 요령을 준수하여 착오 없는 서류 작성이 되어야 한다.
2. 작성 기준일은 매 학년도 종료일로 한다.
3.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 및 확인의 책임을 명심하고 정확·공정을 기하여야 한다.

2 평정대상

1. 대상: 공립 중·고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

가. 교원으로서 승진대상자

- 1) 교장 승진대상자 : 교감으로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
- 2) 교감 승진대상자 : 교사로서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

※ 교장, 교감 승진대상자 중 승진명부작성일 기준, 아래 대상자는 부적격자로 경기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정년 잔여 1년 미만인 자(단, 교장 중임은 제외)
2. 징계의결요구, 징계처분,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
3. 징계처분자 중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
4. 교육공무원 4대비위(금품·향응수수, 상습폭행, 성폭행, 성적조작) 관련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* 교원의 4대 주요비위 중 성폭행 등 성관련 비위: 성희롱, 성추행, 간통, 불륜 등 포함
(교육부 교원정책과-7902(2020.11.6.))
5. 2022.1.1. 이후 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의결 요구·처분을 받은 자
(교육부 교원정책과-5224(2021.6.25.))
6. 기타 교장, 교감으로서 자질 및 승진 결격사유 해당자

나. 교원으로서 자격연수 대상자

- 1) 교감으로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: 중등학교 교감자격 취득 후 매년 2월말일 현재 3년 이상의 교육경력(교육전문직원 경력 포함)과 1년 이상의 교감 실교육 경력이 있는 자